

한국자산관리공사 종합감사 결과

2024. 6.

금 융 위 원 회

I. 감사실시 개요

□ 법적근거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 제4호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직전 감사는 2022.4월 주택 특별공급실태 특정 감사 실시

□ 감사기간 : 2024.4.15.(월) ~ 4.24.(수), 8일(근무일 기준)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예산·회계,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내부통제 등 조직운영 전반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7명*

* 기업구조개선과 사무관 및 회계기준원 소속 회계전문가 포함

□ 감사중점

○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 등을 위한 효율적 지원 등

○ 예산집행·회계처리, 자금관리, 계약사무의 적정성

○ 인력 및 조직관리 실태

○ 임직원 보수·복리후생 지원의 적정성

○ 정관 등 제규정 준수여부

○ 내부통제 실효성 등

2. 감사결과 지적사항

- ①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부서 확대 및 정기적 점검을 통한 내부 통제 강화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관」 제1조의 ‘기업 정상화 지원’ 을 위하여 ‘희생기업 정상화를 지원’ 하고 ‘구조 조정 플랫폼을 운영’ 하는 등 유관기업 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함
 - 캠코 측에서는 ‘21.9.8.~9.24.(10영업일) ‘23.8.16.~8.23.(6영업일) ‘직무 관련 주식거래 자진신고기간’ 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의 자진신고¹⁾를 유도하고,
 - 캠코가 업무집행사원(이하 ‘GP’)으로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임직원은 「사모 집합투자기구 재산운용을 위한 내부통제규정」 제24조를 통해 계좌 개설시 신고토록 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함²⁾
 - 다만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이미 벌어진 행위에 대한 사후적 조치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한 금융거래 여부를 점검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 캠코의 업무 특성상 GP 외 특정기업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뤄져야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직무와 연관된 주식거래 제한 부서를 확대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캠코 내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자체 노력을 강구할 필요 (개선)

1) 두 기간동안 접수된 사례는 0건

2) 내부통제규정 제정 후 ‘계좌개설 신고 사례는 5건이며, 매매내역은 2건(계좌개설 이벤트, RP 매매) 접수

② 임직원 사택 운용 관련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 기준」 등 준수 요청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7.29.)을 배포하였음

○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용 숙소·사택 운영 기준」(2021.12月)에 위배되는 사택의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으로 추정하여 매각하도록 되어있음

- 사택 범위 :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 준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
- 사택 크기 : 1호 또는 1세대 당 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택 1호 또는 1세대 당 수용인원 산정 기준>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방 3개) : 3인 이상 가구 또는 단신 부임 직원 3인 이상 거주
- ◆ 전용면적 45㎡ 초과 60㎡ 이하(방 2~3개) : 2인 이상 가구 또는 단신 부임 직원 2인 이상 거주
- ◆ 전용면적 45㎡ 이하(방 1~2개) : 단신 부임 직원 1인 이상 가구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기준」(2021.12., 국토교통부)

□ 이에 캄코의 ‘임직원 사택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총 226곳의 임직원 아파트형 사택 중,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기준」에 따라 사택의 크기가 ‘1세대 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곳이 1곳(99.00㎡) 있었음³⁾

연번	구분	주소	면적(㎡)	사용자
186	강원지역본부	강릉시 교통	99.00	▲▲▲, ○○○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기준」상 사택 크기 초과 사례(임직원 사택 운영 현황,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

○ 이외 동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사택 1세대 당 수용인원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직원사택은 총 116곳(전체 사택 중 51.3%)에 달하며, 4곳은 아무도 살지 않은 공실로 파악됨

연번	구분	주소	면적(㎡)	사용자
4 [*]	본사	부산진구 범전동	84.97	○○○, ★★
128 ^{**}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대신동	59.95	◆◆◆

* 전용면적 84.97㎡로 직원 3인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2인만 거주
 ** 전용면적 59.96㎡로 직원이 2인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1인만 거주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기준」상 수용인원 미부합 사례(임직원 사택 운영 현황,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

3) 이외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사택(100.20㎡)

- 캠프 측에서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곳의 경우, 대체 전세물건 부족 등으로 매각 등 조치에 차질이 있다고 소명하였으며,
 - 수용인원 미부합의 경우, 남녀구분 과정에서 부득이 한 쪽 성별이 혼자 사는 경우가 있으며, 사택 중 일부는 45㎡ 이상(2인 이상 거주)이나 방이 한 개라 단독거주를 승인한 것이고, 기타 향후 채용이나 인사이동을 위해 여유롭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답변
 - 사택의 공실은 일시적인 것으로 갑작스런 인사이동이나 채용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다만 캠프 측의 설명을 반영하여 검토하더라도 수용인원 산정기준에 미부합하는 곳은 86곳(전체 사택 중 38.1%)에 달하여 갑작스런 인사이동 및 채용에 대비한 것에 비해 과함
 - 또한 인사이동 및 채용은 유관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으로 각 지역본부 정·현원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임
 - 성별을 고려하여 사택을 부여한 경우에도 여직원끼리 동일 사택에 동·호수만 다른 곳에 거주하거나, 인근에 거주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의 경우 굳이 각자가 단독으로 거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주소	동호수	인원	주소	동호수	인원
강릉시 교동 (강원지역본부 사택)	112동 000호	1명	안동시 ♠♠5주공아파트	502동 000호	1명
	113동 000호	1명	안동시 ♠♠2주공아파트	201동 000호	1명
동일 사택에 동·호수만 다른 사례			동일 성별, 인근 거주 사례		

* 두 건물의 직선거리는 약 250m

-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기준」은 소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용면적 45㎡을 초과하는 원룸을 사택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택 크기에 부합하지 않은 사택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수용인원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사택 인원을 배치하도록 하되,
 - 외부환경 요인 등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힘들 경우,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계획을 제출해주길 바람 (개선)

③ 임직원 외부강의 시 신고 기한 미준수

- 캠프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35조의2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그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함
- 이에 '21년 ~ '23년까지 임직원 외부강의 신고현황 확인 결과 총 564건 중 75건에 대해서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를 10일을 초과하여 해당 내용을 신고하였음

임직원 외부강의 신고 현황

(단위: 건)

연도	총 신고 건 수	지연신고 건 수			
		합 계	10일 초과 ~ 20일 이하	20일 초과 ~ 30일 이하	30일 초과
2021	150	13	5	4	4
2022	191	25	20	5	-
2023	223	37	25	4	8
합계	564	75	50	13	12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임직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참석할 경우 자체 행동강령 및 규정을 안내 및 숙지하고, 휴가 등 복무처리 후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내용을 규정에 따라 신고할 필요 (주의)

④ 국외 여행(출장) 시 보고서 홈페이지 미공시

- 캠프코는 「국외여행요강」 제8조에 따라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30일 이내 국외여행 보고서를 소속부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국외여행 계획서와 함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 '21년 ~ '23년까지 임직원 국외여행(출장) 내용을 확인 결과 총 31건 중 3건*은 해당 국외여행 계획서 및 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음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홈페이지 공개여부
2022.10.04.~ 2022.10.09.	☞☞☞ 외 1명	벨기에	2022년 유럽감사인대회 참가	미게시
2022.11.26.~ 2022.12.03.	◆◆◆ 외 1명	스위스, 독일	2022 UN 인권경영 포럼 참가	미게시
2023.10.29.~ 2023.11.04.	▣▣▣ 외 1명	오스트리아	2023년 국제 반부패아카데미 연수 참석	미게시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임직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된 국외여행 시 자체 규정 등을 안내 및 숙지하고, 관련 출장 내용과 관련하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투명하게 공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주의 및 개선)

⑤ 임직원 겸직 허가 등 관련 절차 미준수

□ 캠프코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관」, 「직원복무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음

○ 2021년부터 현재까지 캠프코 겸직 허가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겸직 허가자는 총 65명이고, 세부유형별로 대학교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이 17명, 연구 학술기관, 학회 및 기관의 임원, 위원(자문, 심사, 조정) 등이 44명, 기타 4명*으로 확인됨

* 도서 저자, 공동주택 입주자 동대표 등

○ 다만, 사전허가 받지 않은 겸직업무 수행, 사후 겸직 신청은 관련 규정 등에 금지되어 있지만, 겸직허가자 중 1명은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업무를 수행함

소속	직급	성명	신청일	허가일	겸직기관	직무	수익여부	비고
경기지역본부	2급대우 (선임전문 위원)	●●●	'23.8.30.	'23.9.4.	xx아파트	동대표	여 (5만원/회)	퇴직자

- 경기지역본부 ●●● 선임전문위원(이하 ‘●●●’)은 임금피크 3년차 직원으로 2023.8.29일에 공동주택 동대표에 선출되었고, 이에 따른 겸직 기간은 2023.9.1. ~ 2023.12.31.까지로 확인됨

- ○○○은 공동주택 동대표에 선출되고 나서, 2023.8.30.에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였고, 겸직기간이 지난 2023.9.4.에 최종 허가를 득 하였으며, 이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겸직업무 수행으로 절차 위반 사례에 해당됨
-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참고 사례 등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 겸직허가 신청시 법령에 따라 선출되어 겸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후보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임직원 겸직 허가신청에 있어서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겸직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임직원의 겸직활동 준수사항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 (개선)

⑥ 근로시간면제자 근태관리 개선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용자(이하 “공사” 라한다)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이하 “공사 지부” 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용자 대표 사장 문창용과 2018.1.4.자(2018.1.5.시행) 근로시간면제 시간한도를 연간 11,000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 면제 인원은 풀타임 5명, 파트타임 1명으로 합의하여 2024.4.23.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 5명, 파트타임 1명)에 대한 근태관리에 대해 분기별 사용내역 및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내역서를 노사 공동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출퇴근에 대한 관리방식을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화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일상적인 출퇴근에 대한 근태관리는 근무일지 등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일상적인 출퇴근을 제외한 휴가, 교육, 출장(캠코에서 지급되는 출장), 시간외근무(세부업무는 미기재)에 대해서는 기록·관리를 하고 있음

시간외근무 기록 · 관리현황(예시)

소 속	성명	제목	근무 일자	신청 시작 시간	신청 종료 시간	신청 근무 시간(분)	실제 근무 시간(분)	신청 일자
인재 경영실	●●●	시간외근무 (긴급)신청서	2023. 12.11	18:00	19:20	80	80	2023. 12.11

* 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일부 발췌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여된 연간 소정근로 시간 내 법에서 규정한 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범위, 근로시간면제자 출퇴근 등 근태관리에 대한 자체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주의 및 개선)

⑦ 근로시간면제자 명단 및 개인별 면제시간 통보 명확화

- 공사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제도(Time-off)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용자 대표 사장 문창용과 2018.1.4.자(2018.1.5.시행) 근로시간면제 시간한도를 연간 11,000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 면제 인원은 풀타임 5명, 파트타임 1명으로 합의하여 2024.4.23.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23.2.1.자 제14대 노동조합 전임간부 선임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입후보자 인사발령 요청 및 전임간부 선임통지 명단을 통보하면서 명확한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와 개인별 면제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공문으로 시행

임원선거 입후보자 명단

□ 통보일 : '22.12.5.

소 속	직 위	성 명
△△△△	○○○	A A A
△△△△	○○○○○	B B B
△△△△△△△	○○	C C C

전임간부(임명직) 명단

□ 통보일 : '23.1.16.

소 속	직 위	성 명
□□□□□□□□	○○	D D D
□□□□□□□□	○○	E E E
□□□□□	○○○○	●●●* [※]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8.1.4자 노사합의를 통해 파트타임 1명을 부분 전임자로 인정하고, 부분 전임자 전체 근로시간(연2,000시간) 중 400시간 근무분에 대한 급여를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1,600시간(80%) 근무분에 대한 급여를 반기에 한번씩 공사 지부로 청구하여 노동조합 부분 전임자에 대한 인건비를 정산하여 반납처리하고 있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 위원장(또는 노사협력 부장)은 노동조합 전임간부가 임기 만료 등으로 변경될 경우,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 명단 뿐 아니라 근로시간면제 개인별 면제시간을 사전에 사용자인 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할 필요 (개선)

⑧ 노동조합 임기만료 전임간부 교육과정 부적정

□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르면 전임에서 해임(임기만료) 되었을 시는 일정 기간의 업무관련 교육기간을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사용자와 조합에 세부 사항 결정을 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지부 보충협약」에는 임기만료 전임간부 교육사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캠프인재개발원으로 교육과전 발령 후 사설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중임

□ 캠프 「인력개발세칙」 제7조에 따르면 교육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등을 반영한 인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

「2023년 인력개발계획(안)」 일부 발췌

구분	주요 내용	교육 프로그램
직무 교육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능력, 행동, 태도 육성 교육	직무역량공통, 직무전문, 이러닝, 대외위탁, 학위과정, 자격증취득과정

□ 그러나, 노동조합 임기만료 전임간부 교육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간 협의 (회의록 등은 없음) 후 교육 파견을 시행하였으나, 교육 파견 기간 중 고급금융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민간사설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어학과정으로 명확하게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아래 전임간부 비학위 교육현황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인력개발계획의 주요과정 중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포함한 직무교육**과 비교하여도 업무관련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 [현행자격증] CPA·AICPA(별도운영), CFA, 건축사, CCIM, 건축시공기술사 등

** [자격증 중 이러닝 과정, 1개월 단위] 공인중개사

< 전임간부 비학위 교육 현황 >

대상자	교육과정	교육일정 (연장)	교육비 (추가 교육비)
F F F	▣▣▣대학교 경영대학 (고급금융과정)	'17.2.20~7.21	23,900,000원
G G G	ㄹㄹㄹ학원 (공인중개사 교육과정)	'17.2.1~6.30	1,400,000원
H H H	ㄱㄱㄱ학원	'20. 3~5월 ('20. 6월)	2,700,000원 (900,000원)
	ㅋㅋㅋ	'20. 3~5월	988,400원
I I I	◆◆◆어학원	'20. 3~4월 ('20. 5~6월)	2,360,000원 (2,360,000원)
	J J J	●●●어학원	'20. 3~5월 ('20. 6월)
		<<<변호사회	'20. 3~5월
K K K*	ㅇㅇ고시학원 (공인중개사 연간 교육과정)	'23.2.10~24.1.31	3,100,000원 (교재비 포함)
L L L*	○○○○○ English	'23.3.2~24.2.29	3,600,000원

* 기존 임기만료 전임간부 6개월 교육기간을 조합요청에 따라 교육인원 2명 감소를 반영하여 기간을 1년으로 변경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른 전임간부에 대한 대우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교육 파견을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 (개선)

⑨ 국외위탁교육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캠프 「인력개발세칙」 제58조에 따르면 국외위탁교육은 학위과정, 연구과정, 중·단기과정으로 구분됨

○ 국외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기관에 도착하는 즉시 소재지, 연락처 등을 교육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61①), 교육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매 6개월마다 진행상황 보고의무가 있고(§61②), 교육 완료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61③)

□ 최근 3년(2021.1.1.~2023.12.31.)간 중 국외위탁교육 종료 대상자는 총 11명이었으며, 그 중 6명(54.5%)이 내규에 따른 도착 보고, 진행사항 보고, 결과보고 등을 미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최근 3년간 국외위탁교육 대상자 진행상황보고 현황 및 교육비 총액

	성명	기관	과정	기간	국외 도착보고	국외 진행보고	국외 결과보고	비고	교육비(원)
1	P P P	※※※※ (미국)	MBA	19.08월~ 21.06월	19.9.17	19.12.13 20.9.8	21.11.10	2년 과정	184,590,736
2	Q Q Q	☞☞대 (일본)	공공 정책학	20.04월~ 22.03월	미제출	22.3.25	22.7.25	2년 과정 (재택교육 포함)	66,355,183
3	R R R	♠♠대 (미국)	부동 산학	21.08월~ 22.08월	21.9.2	22.3.25 22.8.29	23.11.20	1년 과정	120,548,383
4	S S S	●●●대 (미국)	MBA	21.06월~ 23.05월	21.7.13	22.3.25 22.8.29 23.3.20	미제출	2년 과정	256,607,637
5	T T T	☆☆ ☆☆ (미국)	부동 산학	21.07월~ 22.08월	21.8.25	22.3.25 22.8.29	23.1.11	1년 과정	141,989,191
6	U U U	♠♠♠ 대 (미국)	부동 산학	21.08월~ 22.08월	21.9.2	22.3.25 22.8.29	23.11.20	1년 과정	120,288,821
7	V V V	♠♠♠ 대 (미국)	부동 산학	21.08월~ 22.08월	21.9.2	22.3.25 22.8.29	23.11.20	1년 과정	120,880,421
8	WWW	▶▶▶대 (미국)	MBA	21.08월~ 23.06월	21.9.1	22.3.25 22.8.29 23.3.20	미제출	2년 과정	207,527,911
9	X X X	※※※※ (미국)	MBA	21.09월~ 23.06월	21.9.10	22.3.25 22.8.29 23.3.20	23.10.17	2년 과정	209,102,788
10	Y Y Y	※※※※ (미국)	MBA	21.09월~ 23.06월	21.9.10	22.3.25 22.8.29 23.3.20	미제출	2년 과정	208,377,428
11	Z Z Z	▷▷대 (미국)	부동 산학	22.08월~ 23.08월	22.9.5	23.3.20	24.1.2	1년 과정	160,764,284

미제출 또는 보고 횟수 미달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공사 예산으로 훈련비가 지급되는 국외 위탁교육 대상자가 보고의무, 제출의무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개선)

⑩ 국외교육 체재비 지급기준 합리화 필요

- 캠프 「인력개발세칙」 제40조에 따르면 공사에서 부담하는 국외교육 훈련비는 교통비, 교육기간 중 [별표 3]에서 정한 체재비, 의료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 국외교육 대상자의 월당 체재비 지급기준 관련하여 북미·호주 등 지역(B) 교육 대상자는 일본·유럽 지역(A) 대상자 대비 2개월 이하 단기 교육의 경우 약 83%, 2개월 초과 중·장기 교육의 경우 약 70% 수준의 체재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됨

국외교육 대상자의 지역별 월당 체재비 비교

(단위 : USD)

구 분	직 급	일본, 유럽(A)	북미, 호주, 홍콩, 싱가포르(B)	B/A (%)
단 기 (2개월 이하)	임 원	6,750	5,580	82.67%
	1·2급	6,120	5,040	82.35%
	3·4급	5,400	4,500	83.33%
	5급 이하	4,770	3,960	83.02%
중·장기 (2개월 초과)	임 원	2,600	1,900	73.08%
	1·2급	2,400	1,700	70.83%
	3·4급	2,200	1,500	68.18%
	5급 이하	2,000	1,400	70.00%

[참고] 타 공공기관의 국외교육대상자 체재비 지급 기준

A기관	B기관	C기관																																	
<p>「연수 시행세칙」 [별표4] 2. 해외학술연수직원(월당 체재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단위</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미국</td> <td>USD</td> <td>1,600</td> </tr> <tr> <td>일본</td> <td>JPY</td> <td>3,200</td> </tr> <tr> <td>유럽(EMU)</td> <td>EUR</td> <td>1,900</td> </tr> <tr> <td>영국</td> <td>GBP</td> <td>1,100</td> </tr> <tr> <td>기타유럽</td> <td>USD</td> <td>2,100</td> </tr> <tr> <td>기타</td> <td>USD</td> <td>1,500</td> </tr> </tbody> </table>	구분	단위	금액	미국	USD	1,600	일본	JPY	3,200	유럽(EMU)	EUR	1,900	영국	GBP	1,100	기타유럽	USD	2,100	기타	USD	1,500	<p>「여비규정」 [별표6] 학술연수자에 대한 월당 체재비 (단위 : USD)</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체재비 (일비+숙박비+식비)</th> </tr> </thead> <tbody> <tr> <td>일본, 유럽, 홍콩, 뉴욕, 워싱턴D.C., LA, 싱가포르</td> <td>1,750</td> </tr> <tr> <td>북·남아메리카, 동남아, 기타</td> <td>1,350</td> </tr> </tbody> </table>	구분	체재비 (일비+숙박비+식비)	일본, 유럽, 홍콩, 뉴욕, 워싱턴D.C., LA, 싱가포르	1,750	북·남아메리카, 동남아, 기타	1,350	<p>「여비규정」 [별표7] 학술연수(월체류비) (단위 : USD)</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체재비 (일비+숙박비+식비)</th> </tr> </thead> <tbody> <tr> <td>가 or 나 등급</td> <td>1,750</td> </tr> <tr> <td>다 or 라 등급</td> <td>1,350</td> </tr> </tbody> </table> <p>* 가) 뉴욕, 도쿄, 런던, LA,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베이징, 멕시코, 미국, 인도, 일본, 독일,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벨기에 등 다) 뉴질랜드, 브라질, 중국 등 라) 네팔, 라오스, 몽골 등</p>	구분	체재비 (일비+숙박비+식비)	가 or 나 등급	1,750	다 or 라 등급	1,350
구분	단위	금액																																	
미국	USD	1,600																																	
일본	JPY	3,200																																	
유럽(EMU)	EUR	1,900																																	
영국	GBP	1,100																																	
기타유럽	USD	2,100																																	
기타	USD	1,500																																	
구분	체재비 (일비+숙박비+식비)																																		
일본, 유럽, 홍콩, 뉴욕, 워싱턴D.C., LA, 싱가포르	1,750																																		
북·남아메리카, 동남아, 기타	1,350																																		
구분	체재비 (일비+숙박비+식비)																																		
가 or 나 등급	1,750																																		
다 or 라 등급	1,350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국가 및 지역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외교육 체재비 지급 관련 지역구분 및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개선)

⑪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미개최

- 캠프는 소속 직원의 채용과 승진·징계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기구(이하 ‘인사위원회 등’)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 제14조(인사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서 공공기관은 채용 등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캠프 「인사규정」 제77조(인사위원회 설치)에서 인사관리에 따른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9조(위원회의 기능)에서 인사위원회는 ‘일반직 및 별정직’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캠프는 ‘21년도 채용형 인턴 및 경력직 채용계획 수립 시 경영지침 및 자체 인사규정과 달리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만 득하여 채용을 진행하는 등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사위원회 미개최 사례 >

채용공고명	종류	공고일	채용인원	인사위
'21년 채용형 인턴 채용	제한	'21.3.19	일반직 78명	X
'21년 상반기 경력직 채용	제한	'21.5.20	일반직 8명	X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경영지침」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채용계획 수립시에도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개선)

⑫ 제한경쟁채용시 사전협의 미이행

- 공공기관은 제한경쟁채용시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을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한경쟁 요건이 관련 직무에 적합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이와 관련하여 「경영지침」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에서 제한경쟁 시험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채용전반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3조(전문채용의 적정성 검증 등)에서 전문채용*의 경우 채용계획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감독부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조(정의) "전문채용"이란 「인사규정」 제10조제1항 단서 각 호 및 특수 분야 전문직종 등의 채용을 위해 시행하는 제한경쟁 채용방식을 말한다.

- 그러나 캠코는 '22년도 업무지원직(국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을 채용하면서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채용이 '공개경쟁채용'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주무부처와의 사전협의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전협의 미이행 사례 >

채용공고명	자격	공고일	채용인원	사전협의
2022년 공무직 채용(실태조사)	운전면허 소지자	'22.3.18	14	X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향후 공개경쟁채용과 제한경쟁채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필요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개선)

⑬ 제한경쟁채용시 채용심의(점검)위원회 미운영

- 공공기관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점검위원회를 운영하여 채용 과정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부정합격자 및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이와 관련하여 「경영지침」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에서 제한 경쟁시험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결정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통해 당해 채용이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캠프코 「직원채용운용세칙」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에서 채용 제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채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당해 채용이 관계법령, 내부규정, 당초 채용계획 등을 준수하여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캠프코는 ‘21~’22년도 단기계약직 채용에서 ‘채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채용검증 절차 없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음

< 채용심의(점검)위원회 미운영 사례 >

채용공고명	채용유형	채용직렬	채용점검 위원회 운영
2021년 체험형인턴 채용(1차)	인턴 채용	단기계약직	X
2021년 체험형인턴 채용(2차)	인턴 채용		
2021년 체험형인턴 채용(장애인)	사회형평적 채용		
2021년 체험형인턴 채용(3차)	인턴 채용		
2022년 체험형인턴 채용(1차)	인턴 채용		
2022년 장애인 단기계약직원	사회형평적 채용		
2022년 체험형인턴 채용(2차)	인턴 채용		
2022년 체험형인턴 채용(장애인)	사회형평적 채용		
2022년 체험형인턴 채용(3차)	인턴 채용		
2023년 체험형인턴 채용(1차)	인턴 채용		
2023년 장애인 단기계약직 채용	사회형평적 채용		
2023년 체험형인턴 채용(2차)	인턴 채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단기계약직 채용에 대해서도 채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 (개선)

⑭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였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채용 표준안’ 및 ‘채용 관련 유의사항’ 등을 통해 공정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경영지침’ 및 ‘혁신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캠프코는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관리부서장의 적정성 검토 후 사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 「경영지침」에 직원채용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캠프코 「직원채용운용세칙」은 최초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과정에 관한 세칙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채용계획 변경의 경우에만 별도의 세칙이 마련되어 있음
- 또한, 「경영지침」에 따르면 직원채용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캠프코는 특수한 경우의 채용자격을 사장이 별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캠프코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 채용자격을 사장이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관련 법령 및 경영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자체 규정인 「인사규정」 및 「직원채용운용세칙」 등 내부규정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개선)

⑮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방식 부적정

- 캠프코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가목3),5)에 따라 소기업 및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i) 5천만원 초과금액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소기업 및 사회적기업과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 포함) 구입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음
- 이에 캠코는 ‘20년 상반기 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20년 추석명절부터 재직 임직원에 대하여 명절 선물을 지급하여 왔으며, ‘21. 9월과 ‘22. 1월 명절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물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입하였으며,
- 또한 ‘22. 3월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임직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물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입하였음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물품구매 1인견적 수의계약 현황(3년간)

(단위:천원)

NO	계약 일자	구분	계정	계약 금액*	구입품목	기업형태	계약방법	견적	비고
1	2021. 09/23	'21년 추석선물	비 급 여성 복리후생비	95,400	어묵세트	소기업	수의계약	1인 견적	
2	2022. 01/24	'22년 설 선물	비 급 여성 복리후생비	95,200	영광굴비세트	사회적 기업	수의계약	1인 견적	
3	2022. 03/28	창립 60주년 기념물품	비 급 여성 복리후생비	94,650	은멸치특선	소기업 /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1인 견적	

* 부가세 별도

- 그러나 캠코는 임직원 명절 선물 등을 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건당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 5천만원 초과시 견적입찰을 하여야 하나 어묵세트 및 영광굴비세트 등은 음식물의 재료로 보았으며, 신선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견적입찰(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의 예외로 봄

ii) 사회적기업 자격 충족여부 확인 없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6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바,
- 캄코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을 사회적기업과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시점의 사회적기업 해당여부와 고용비율 확인서를 확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사회적기업 자격 충족여부의 확인 없이 ‘21.10월 ~’23.11월까지 총 5건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물품 용역·구매 계약 현황(3년간)

(단위:천원)

NO	계약 일자	계 약 명	계약 금액*	계약자	사회적기업 해당여부 (기준일자)	충족여부 검토
1	2021. 03/23	공사 제59주년 창립기념일 기념물품 구입	33,600	사회적기업	2015.12.28.	×
2	2021. 10/27	공사홍보 및 코로나 극복 등을 위한 ESG 사회공헌활동 계획(안)	50,000	"	2017.7.4.	×
3	2022. 03/21	수산 운송업 종사자 방역지원 및 공사 홍보계획 승인	50,000	"	2021.5.11.	×
4	2023. 01/11	2023년 설 선물 지급 관련 계약	32,750	"	2018.11.6.	×
5	2023. 11/21	본사 직원생활관(광안동 기숙사) 중앙제어 PC 및 소프트웨어 교체계약	35,500	"	2016.9.6.	×

* 부가세 별도

-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소기업 및 사회적기업과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시 부산 및 경상남도 내 동일 업종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 (개선)
- ⇒ 아울러 5천만원 초과 물품구매 시 관련자에게는 책임의 정도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촉구

⑩ 합리적인 예산 편성 등을 통한 경비예산 집행률 제고 필요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업무추진비, 국내·외 여비 등 주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점검하여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의 효율적·합리적 집행에 관한 지침」(캠코)상 예산관리자는 예산의 편성목적, 금액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각 부문 예산관리자는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그 편성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3년(2021.1.1.~2023.12.31.)간 캠코의 경상경비 예산 및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일부 항목의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 (경상연구개발비) 사내 벤처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2022년도에 신규 편성되었으나, '22년도 집행률도 32%에 불과하며, '23년도는 사내벤처 신청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됨
 - * ①DART 감사보고서 기반 기업분석 금융공학 플랫폼 ②캠코 미디어 콘텐츠 Agency 사업
 - (조사분석비) 국가승인통계 품질관리 및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23년 대비 3천만원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통계 인력 미확보 등의 사유로 '23년도 집행률이 27.3%에 불과함
 - (협회비) 의무가입대상(금융보안원) 및 공공기관 유관협회(한국감사협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납입 등 예측가능한 지출비용임에도 집행률이 '21년 57%, '22년 61.1%, '23년 72%으로 낮음
 - (보험료, 피복비) 최근 3년간 집행률에 대한 고려없이 예산액이 일정(보험료)하거나, 집행률은 매년 감소함에도 예산액은 전반적으로 상승(피복비)하는 것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저조한 경비예산 세부항목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 (A)	집행 (B)	집행률 (B/A)	예산 (A)	집행 (B)	집행률 (B/A)	예산 (A)	집행 (B)	집행률 (B/A)
경상연구 개발비	-	-	-	140	45	32.1	40	-	0
조사분석비	8	7	87.5	14	12	85.7	44	12	27.3
협회비	293	167	57.0	293	179	61.1	264	190	72.0
등기소송비	346	96	27.7	346	143	41.3	346	105	30.3
보험료	303	179	59.1	303	141	46.5	303	168	55.4
피복비	188	147	78.2	225	157	69.8	223	120	53.8
경비예산총액	88,649	70,701	79.8	94,152	78,150	83	96,865	84,396	87.1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전년도 집행률 등을 고려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경비예산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권고)

⑰ 외부용역 연구 보고서 관련 일부 절차상 관리 불철저

- 예산의 일반원칙으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의 이월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예산의 효율적·합리적 집행에 관한 지침」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 ‘21~‘23년 동안 일부 연구용역과제를 추출해 회계연도 내 최종보고서 확인을 비롯한 대금지급이 이뤄졌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9개 과제 중 회계연도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6건(66.7%)이며, 연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회계연도 내 처리되지 못한 건은 3건으로 확인됨

-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 단기미지급비용 전표 처리하여 회계처리상 문제는 없으나, 예산의 일반원칙 및 지침상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연구기간을 연장한 연구용역의 경우는 연구기간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필요한 회계처리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더하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르면,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지체상금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 예규 제19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 내 계약 연장을 신청하여 연장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음
 - 한편 동 예규 제18조 제3항에서는 계약연장의 조건과 지체상금 부과를 위한 지체일수 산정 예외 사유로 ‘계약상대방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지체’ 를 열거함
 - 이와 관련해 「◆◆◆방안 연구」는 계약상대방의 요청으로 2차례(‘22.9.15., ‘22.12.1.)에 거쳐 연장을 한 바 있음
 - 계약상대방 측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계약 변경 사유로 ① 착수 지연에 따른 수행기간 연장 필요, ② 검수 등 보고서 품질 제고를 위한 시간확보를 들었음

- 해당 내용만으로는 동 예규 제18조 3항 제6호에 따른 ‘계약상대방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체상금 부과조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음

※ 한편, 이에 대해 ‘캠코’ 측에 따르면 해당 용역과제는 선례가 없었던 연구로 계약 상대방 측에서 과제 관련 사전조사 및 추가 연구원 모집 등의 사유로 본격적인 연구가 지연되었다는 표현으로 상호 원만한 합의를 거쳤다고 소명

○ 이는 계약의무 지체와 관련된 조항이 계약서 상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점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 실제로 계약서 내용에는 제15조 지체상금의 비율을 정하고 있는 외 상세한 내용이 없어 계약당사자 상호 간 계약의무 지체상황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불필요한 계약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계약의무 지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역 계약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관련 사항들을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상세하게 이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 결과 등을 공개하는 사유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므로 이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이며, 법률에 따라 비공개할 경우에도 그 사유 등이 명확해야 함

□ ‘알리오’에 게시된 총 27건의 외부용역 연구보고서 중 공개는 2건(7.4%)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한 연구보고서 25건 중 비공개사유를 올바르게 기재한 것은 7건(28.0%)에 불과함

* 착오기재 예시 : 제9조를 제8조, 제7호를 제7조 또는 제7항으로 기재

○ 또한 「○○○○구축 방안 연구」는 ‘21~‘23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학술연구용역관리요강」상 행정절차를 거쳐 ‘22.5.19. 결과보고까지 마쳤으나, ‘알리오’에 게시되지 않음

-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내용이기도 함
- 이에 「공시세칙」에 따라 비공개 기간을 설정해 공시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종료되는 시점마다 공시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연구용역 계약 시 불필요한 연장으로 회계연도 안에 완료하지 못해 예산 이월 등 불필요한 행정처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학술연구용역 보고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각 소관 부점이 적절히 공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 (주의 및 개선)

⑱ 임대보증금의 유동성 분류 부적절

- 캠프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에 의거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에 의거하여 회계처리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규칙·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라야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2조(부채의 분류)에 따르면 ‘유동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있는 부채’라고 정함
 - 캠프코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취한 임대보증금을 비유동부채(장기 임대보증금)로 공시하고 있으나,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의 종료 예정되어 임대보증금이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보증금은 유동부채로 재분류하여야 함

최근 3개년 임대보증금 상환내역(예시)

전표일자	금액	적요
2023-04-26	9,624,000	(주)온일 4년차 계약갱신에 따른 임대료 증액분 현금입금
2022-01-12	94,185,000	캠코양재타워 / 주차장_(주)하이파크 / 부경에스이에스(주)
2021-01-08	156,750,000	양재타워 주차장 임대차보증금(하이파크)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보증금을 유동부채로 분류되도록 방안을 수립하고 일관된 회계처리를 수행할 필요 (개선)

⑱ 컴퓨터소프트웨어 취득금액의 무형자산 미계상

- 캠프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기금의 운용 계획 등)에 의거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에 의거하여 회계 처리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규칙·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라야 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무형자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이며, 무형자산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포함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무형자산) 제4조에 따르면 ‘무형 자산’이 ‘유형의 요소와 무형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어떤 요소가 더 유의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정함
 - 캠프코는 ‘업무용 소프트웨어(PDF편집기) 라이선스 도입’ 대금 등을 유형자산(전산비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식별 가능하며 유형적인 요소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함

최근 3개년 소프트웨어 구입내역(예시)

전표일자	금액	적요
2023-05-04	8,845,140	업무용 소프트웨어(PDF 편집기) GA 라이선스 도입
2022-09-14	9,900,000	「국유재산관리시스템 수출」을 위한 영문 웹사이트 구축
2021-01-29	11,000,000	온라인 매뉴얼(3Rabbitz Book) 사용자 라이선스 구입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향후 취득할 자산에 대해서 무형자산 인식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일관된 회계처리를 수행하필요 (개선)

* 거래의 성격, 계약 기간, 금액적 중요성, 유형의 요소 포함 여부 등을 고려

⑳ 담보부사채 발행기업 지원 시 저신용중견기업 지원 실적 제고 필요

□ 캠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캠코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라목,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담보부사채 발행시 신용공여(지급보증)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회사채시장을 개선·활성화하는 '담보부사채 발행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은 '17년부터 시행하여 '23년말까지 총 14개 기업에 4,240억원 규모로 신용공여를 지원하였으며, '24년에도 총 6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임

○ 그간 지원한 실적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에 10건(71.4%), 3,020억원(71.2%), 중견기업에 4건(28.6%), 1,220억원(28.8%)의 신용공여가 지원되어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음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인 경우

○ 또한, 지원실적 중 2건, 700억원은 기업신용등급*(Issuer rating)상 금융채무의 상환가능성이 높은 A-등급 대기업의 담보부사채 발행에 지원되었음

※ 기업신용등급체계 (단, 각 신용평가사별로 동일한 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상이 가능)

- ▶ AAA~A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높음
- ▶ BBB~B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불확실
- ▶ CCC~C : 금융채무의 채무불이행 위험수준이 높음
- ▶ D : 상환불능

○ 캠코법에서 신용공여의 대상을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을 두어 지원대상을 선별할 필요는 없고, 동 사업의 목적 중 하나인 회사채 시장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모가 큰 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지원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실적('23년말 기준)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신용등급	대기업		중견기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0	302,000	4	122,000
A-	2	70,000	-	-
BBB+	3	112,000	1	24,000
BBB0	4	100,000	2	80,000
BB+	1	20,000	-	-
B-	-	-	1	18,000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사업목적 중 하나로 저신용기업이 담보부 사채 발행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현재보다 더 상향되도록 사업을 운영해나갈 필요 (개선)

㉑ 기업키움이 프로그램의 기업 지원 기준금리와 자금조달 기준금리 간 금리산정 시차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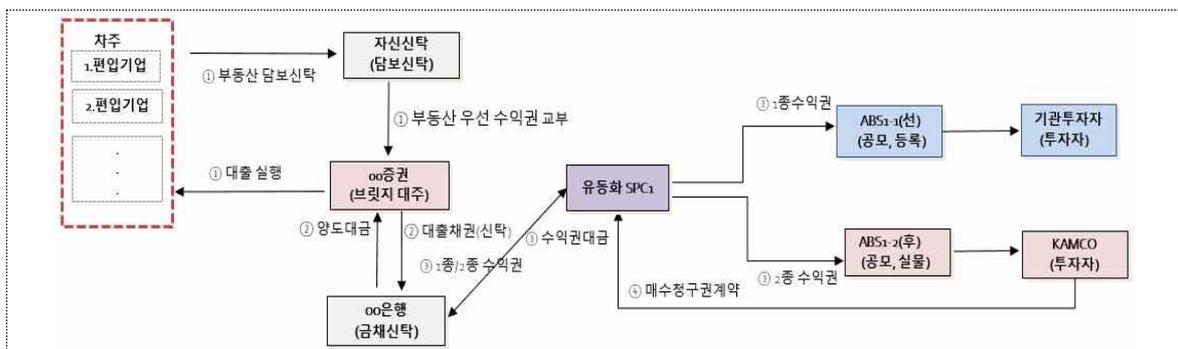
□ 캠프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캠코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근거하여, 기업이 자산을 담보신탁 후 이를 바탕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인수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기업키움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15년부터 추진된 기존 '자산 매각 후 재임대(Sale&LeaseBack ; S&LB)' 사업의 경우 캠프코가 기업의 자산(공장오피스창고 등)을 직접 인수한 후 이를 기업에 재임대함으로써, 기업이 유동성을 제공받으면서도 기존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였으나, 캠프코만의 재원으로 추진되어 지원여력 한정,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음

○ 이에 캠프코는 기존 S&LB사업의 애로 해소 및 효과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여러 기업들의 자산을 담보신탁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캠프코와 민간자금(기관투자자)이 인수하는 '기업키움이 프로그램'을 '23년부터 실시*하였음

* 지원실적 : ('23.7월) 2개사, 467억원 / ('23.11월) 5개사, 849억원

< 기업키움이 프로그램 구조도 >



□ 다만, 현재 동 사업의 구조상 ①기업 지원 기준금리와 ②SPC가 자금을 조달하는 선순위유동화사채의 발행 기준금리(조달 기준금리) 간 금리산정의 시차*로 인해 리스크 발생 우려가 있음

* ① 지원 기준금리 : 지원시점 직전월말 기준, ② 조달 기준금리 : 채권 발행일 3영업일 전

○ 이러한 금리산정 시차는 금리가 상승할 경우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고, 금리 변동성이 커질수록 사업의 리스크 증가 및 안정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 산정금리차 발생 사례

▶ '23.11월 지원시 지원금리와 조달금리가 7영업일의 시차가 존재*

* 산정시기 : (지원 기준금리) '23.10.31일, (조달 기준금리) '23.11.9일

(다만, 동 시기에는 금리 하락추세로 인해, 10.31일 대비 11.9일 금리는 하락)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기관 리스크 관리 및 사업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사업의 지원 기준금리와 조달 기준금리의 산정시기를 일치시키거나 산정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개선)